

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호 중 “출자·출연기관”을 “출자·출연기관을 말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산하 공공기관”이란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<u>출자·출연기관</u>	2. ----- ----- ----- -- <u>출자·출연기관을 말한다.</u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